

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과 미사용 시 보상의무

1. 신설

현행 근로기준법 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(월별 1일 발생)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날에 1년간 80%이상 출근한 경우 익년도에 사용할 연차 15일 총 26(11+15)일이 발생하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미사용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.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 **에 따라 2020.3.31. 공포·시행일(예정) 이후**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어 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11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2.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휴가)·제61조(사용촉진)개정 경과

< 법 개정 경과 >

- 1년 미만 출근자 연차사용촉진제도도입 등¹⁾
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(‘19.11.21, 김학용 의원)
- **국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**
 - 환노위 의결(‘20.2.17.) → 국회 본회의 통과(‘20.3.6.)
- **공포 및 시행**
 - 국무회의 의결(‘20.3.24.) → 법제처 공포·시행(‘**20.3.31.2)**)

1) 원문(고용노동부,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, 2020.3. 1쪽)은 ‘1년 미만 및 1년간 80% 미만 출근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등’으로 작성되었으나, 본 주제에서는 1년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에 대해서 기술하는 바 이에 1년간 80% 미만 출근자는 후술하기로 하고 생략하여 표기함.
2) 본 주제에 대해 작성일(20.20.3.24.) 기준으로 국무회의 의결일자가 ‘20.3.24.로 발표되었고, 이에 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 044-200-6563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, 2020.3.31.자로 공포·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여 ‘20.3.31.자로 작성한 점 참고바랍니다.

3.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신설내용³⁾

<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전·후 비교>

개정 전	개정 후
<p>■ 사용촉진제도 없음</p> <p>⇒ 연차휴가 소멸 시,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</p>	<p>■ 사용촉진제도 신설</p> <p>⇒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</p>

1) 개요

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(최대 11일)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

2) 사용촉진 절차

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함

※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

< 1차 촉진 >

○ (시기·방법)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(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)·근로자별 서면 촉구

○ (내용)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,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

< 2차 촉진 (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) >

○ (시기·방법)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(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)·근로자별 서면 통보

○ (내용)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

3) 고용노동부,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, 2020.3. 5쪽 인용

<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(1월1일 입사자 기준) >

	<1차 촉진> (사용자→ 근로자)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·통보 요구	(근로자→ 사용자) 사용시기 지정·통보	<2차 촉진> (사용자→ 근로자)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·통보
연차 9일	10.1.-10.10. (3개월 전, 10일간)	10일 이내	11.31.까지 (1개월 전)
연차 2일	12.1.-12.5. (1개월 전, 5일간)	10일 이내	12.21.까지 (10일 전)

3) 효과 :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,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

-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. (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)

※ 금번 개정 근로기준법(2020.3.31.시행)에서는 추가적으로 1년간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익년도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대상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첨자료」 참조바랍니다.

4. 적용대상 연차휴가 : 공포·시행일(2020.3.31.)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되어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나, 시행일 이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됨.

5. 결어

2020.3.31.시행(예정)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동안 1년 미만자에게 최대 11일과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11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금전 보상 의무가 없게 되므로 이점 참조하여 연차휴가관리에 유의바랍니다.

#별첨 : 「1년간 80%미만 출근자·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(2020.3,고용노동부).끝. 제339호(3.30)